

## I. 서 언

1. 캄보디아 사법시스템의 개관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 II. 캄보디아의 사법기관

1. 헌법위원회
2. 최고법관위원회
3. 대법원
4. 항소법원
5. 제1심 법원

## III. 법조인

1. 판사와 검사
2. 변호사

## IV. 법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1. 비공식적 분쟁해결
2. 국왕청문제도
3. 중재

## V. 결 어

## I. 서 언

### 1. 캄보디아 사법시스템의 개관

캄보디아 헌법에 의하면 사법시스템은 ①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② 법원, ③ 법원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최고법관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 ④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의 사법시스템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캄보디아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에는 캄보디아의 사법시스템 재건도 포함

# 캄보디아의 사법체계

최 수 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특집 Emerging Countries I ]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되었다.<sup>1)</sup> 당시 법학교육을 받은 인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대부분의 판사 및 검사를 전직 교원으로 충당하였다.<sup>2)</sup>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sup>3)</sup> 전문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인재의 부족은 공산주의 정책과 결합되어 법무부에게 사법에 관하여 지배적 권한을 주었다. 사법에 관한 법무부 지배의 합법성은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sup>4)</sup> 또한 캄보디아 사법시스템에 의하면 검사가 대법원과 항소법원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소추권과 재판권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규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 1) 사법권의 독립성 확보

캄보디아의 헌법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 분립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채택하고 있다.<sup>5)</sup> 캄보디아 헌법 제128조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헌법은 사법부의 권한은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일체의 소송을 포함하고,<sup>6)</sup> 사법권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부여되지 않는다고<sup>7)</sup>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을 재차 천명하고 있다. 즉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타적으로 속하고,<sup>8)</sup> 오로지 법관만이 재판할 권한을 보유한다.<sup>9)</sup> 그리고 법관의 지위는 보장되고 법관에 대한 징계권은 최고법관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 이하 'SCM')가 보유한다.<sup>10)</sup>

1) 크메르 루주(Khmer Rouge) 체제하에서 캄보디아 판사와 변호사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분야는 황폐화되어 있었다. *Aian Development Bank(hereinafter ADB), Cambodia: Enhanc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4(2000).*

2) 그 당시 교사들이 크메르 루즈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가장 큰 지식계층이었다. *Id.*

3) 사회주의적 법원칙과 절차는 1980년대의 캄보디아의 사법기관과 법률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제에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사회주의적 법률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 *Id.*

4) *Id.*

5) 헌법 제51조, 캄보디아 현행 헌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9년 3월에 개정되었다(Royal Kram No. Roy-Kr/0399/01).

6) 헌법 제128조.

7) 헌법 제130조.

8) 헌법 제128조.

9) 헌법 제80조.

10) 헌법 제133조.

헌법은 캄보디아 국왕에게 최고법관위원회(SCM)의 도움을 받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11)</sup>

##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상호관계

우선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헌법 제136조, 헌법위원회법 제19조),<sup>12)</sup> 반대로 입법부는 제정하는 모든 법률을 통하여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판사 및 검사에 관한 법률(State on Judges and Prosecutors), 최고법관위원회법(Law on Supreme Council of Magistracy)이 특히 그러하다.<sup>13)</sup>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행정작용을 규제할 수 있고<sup>14)</sup> 행정부 구성원은 업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sup>15)</sup> 행정부는 판결을 실행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최고법관위원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sup>16)</sup> 또한 수상 및 부수상은 입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데, 즉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도 있고, 법률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sup>17)</sup>

## II. 캄보디아의 사법기관

### 1.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정이 아니고,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헌법위원회는 자유선거와 공정선거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권, 후보선출권, 정당, 부정선거 등과 같은 선

11) 헌법 제132조.

12) 법원은 소송 중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의심될 때에는 대법원에 10일 이내에 그 사건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그 사건을 검토하여 위헌성 여부가 의심되는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헌법위원회법 제19조).

13) 헌법 제134조 및 제135조.

14) 헌법 제39조.

15) 헌법 제126조.

16) 최고법관위원회법 제2조.

17) 헌법 제91조.

거관련 분쟁은 최종적 판단을 위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sup>18)</sup>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그 권한에 관하여는 헌법위원회법(Law on the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과 국회를 통과하고 상원에 의하여 검토된 법을 해석한다.<sup>19)</sup> 헌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상원의원(Senate members)선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건을 관장한다.<sup>20)</sup>

### 1) 위원회 구성 및 재판관 자격

헌법위원회 위원은 법률, 행정, 외교, 경제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받고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헌법 제138조).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sup>21)</sup>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9년이다. 위원 중 3명은 국왕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sup>22)</sup>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최고법관위원회(Council of Magistracy)가 선출한다.<sup>23)</sup> 위원회의 3분의 1은 매 3년마다 교체되는데, 1명은 국왕이 지명하고 국회와 최고법관위원회가 각 1명씩 선출한다.<sup>24)</sup>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위원회 위원 과반수로 선출된다. 위원장이 궐위·유고시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가진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의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보유한다.<sup>25)</sup> 위원장 선출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상원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을 가지고 있다.<sup>26)</sup>

18) 헌법위원회법 제26조. 헌법위원회법은 1998년(Preah Reach Kram N0 CS/RKM/0498/ 06 of Arpil 08, 1998)에 제정되었고, 2007년(Preah Reach Kram N0 NS/RKM/ 0107/ 005 of January 31, 2007)에 개정되었다.

19) 헌법 제136조.

20) 헌법 제136조, 헌법위원회법 제25조.

21) 헌법위원회 위원은 크메르 국적을 출생시부터 보유하여야 하고, 높은 인격을 보유하며, 45세 이상 법학, 행정학, 외교학 또는 경제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15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헌법위원회법 제3조).

22) 이때 헌법위원회 위원 지명에는 국회재적의원(하원) 과반수를 요한다(헌법위원회법 제3조). 이때 2차 투표까지 행해질 수 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의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국회는 최고득표를 한 5명을 제2차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차 투표에서는 상대다수결이 적용된다. 이때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9년의 임기로 임명되고, 두 번째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6년의 임기, 그리고 3번째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3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만약 투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국회에서 헌법위원회 위원선거를 하기 전 그 후보들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endorsement)를 얻어야 한다. 국회 구성원은 한 번에 오직 1명의 후보만을 지지할 수 있다(헌법위원회법 제3조).

23) 헌법 제137조; 헌법위원회법 제4조.

24) 헌법위원회법 제4조.

25) 헌법위원회법 제5조.

26) 헌법 제137조.

헌법위원회 위원은 상원의원 또는 국회의원의 직, 공무원의 직, 현직 판사(in-post judges), 정당 대표 및 부대표, 노동조합(trade unions)의 대표, 부대표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또한 헌법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동안 다른 공식적 직위 또는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sup>27)</sup>

## 2) 헌법위원회의 권한

왕, 수상, 국회의장, 상원의장, 국회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상원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은 국회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검토를 위하여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sup>28)</sup> 국회, 상원의 내부규칙과 국회와 상원조직에 관한 법(organic laws)도 법률의 공포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법률과 내부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sup>29)</sup>

이미 공포된 법률도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다. 즉 공포된 이후에 왕, 상원의장, 국회의장, 수상, 상원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국회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제청할 수 있다.<sup>30)</sup> 캄보디아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 또는 국회의장, 상원의장을 통하여 법률의 위헌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sup>31)</sup>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된 법률조항은 공포되거나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은 종국적이다.<sup>32)</sup>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위원회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즉 캄보디아 국왕은 헌법위원회에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sup>33)</sup>

헌법위원회는 1998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조직되었다. 헌법위원회법(organic law)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국회의원 선거관련

27) 따라서 임명된 헌법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 지위 또는 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떠나야 한다(헌법위원회법 제5조).

28) 헌법 제140조. 헌법위원회법 제17조.

29) 헌법 제140조.

30) 헌법 제141조. 헌법위원회법 제18조.

31) 헌법 제141조.

32) 헌법 제142조.

33) ADB, supra note 1, at 25.

분쟁을 그 권한으로 한다. 현재 헌법위원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법은 상원의원직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재판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sup>34)</sup>

헌법에는 법안의 헌법위원회로의 회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헌법위원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헌법규정과 반대로 의회에 의하여 승인된 실체법(nonorganic laws)은 아직도 종종 헌법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공포를 위하여 왕에게 이송된다.<sup>35)</sup>

## 2. 최고법관위원회

### 1) 개요

캄보디아 헌법 하에서 최고법관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주요 기관이다.<sup>36)</sup> 최고법관위원회만이 법관을 규율한 권한과 모든 법관과 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국왕에게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37)</sup> 최고법관위원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1994년에 최고법관위원회법(Law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Supreme Council of Magistracy)이 제정되었다. 최고법관위원회는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sup>38)</sup>

### 2) 최고법관위원회 구성원과 그 임기

최고법관위원회의 구성<sup>39)</sup>은 다음과 같다.

- ① 왕(위원장)
- ② 법무부장관
- ③ 대법원장
- ④ 대법원소속 검사장(General Prosecutor to the Supreme Court)
- ⑤ 항소법원장(President of Appellate Court)
- ⑥ 항소법원 소속 검사장(General Prosecutor to the Appellate Court)
- ⑦ 캄보디아 모든 판사가 선출한 3명의 판사

34) ADB, *supra* note1, at 25.

35) *Id.*

36) 헌법 제132조, 최고법관위원회법 제1조.

37) 헌법 제133조 및 헌법 제134조.

38) 만약 긴급한 경우에는 10일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최고법관위원회법 제10조.

39) 최고법관위원회법 2조.



그리고 최고법관위원회는 예비인력으로서 전국의 판사에 의하여 선출된 3명의 위원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판사들이 선출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 이들을 대체한다. 판사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재임가능하다.<sup>40)</sup>

국왕의 부재시에는 상원의장이 국왕을 대신하여 최고법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왕의 부재시에 최고법관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sup>41)</sup>

### 3) 최고법관위원회의 권한

사법부 관련 실질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첫 번째 최고법관위원회는 1999년 말에 소집되었다.<sup>42)</sup>

최고법관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법적 기능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고법관위원회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 진급, 전보, 직무정지, 파면을 국왕에게 건의할 수 있다.<sup>43)</sup>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의회법안(proposed laws) 또는 정부법안(draft law)은 모두 최고법관위원회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동 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그 의안이나 법안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비상시엔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sup>44)</sup> 그러나 이러한 최고법관위원회 의견에 구속력이 있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 대법원

### 1) 대법원의 구성과 권한

대법원(Supreme Court, SC)은 프놈펜(Phnom Penh)에 위치하여 있다. 대법원은 캄보디아 최상급심 법원이며, 이는 캄보디아 전역을 그 재판관할권으로 하고 있다. 1994년부터 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상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데, 이때 대법원은 법률심만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9명의 대법원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며,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 하게 된다.<sup>45)</sup>

40) 최고법관위원회법 제4조.

41) ADB, supra note 1, at 25.

42) Id.

43) 최고법관위원회법 제11조.

44) 최고법관위원회법 제11조.

45) 법원조직법 제14조.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경우에는 통상 5명의 판사(magistrates)가 담당하며<sup>46)</sup> 그 중 한 명이 의장이 되고, 합의부사건인 경우에는 9명의 판사가 담당하며 그 중 한 명이 그 의장이 된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과 4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 중 최고법원이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Chief/President of the Court), 부대법원장(deputy chief judge/Deputy president), 판사로 구성되고,<sup>47)</sup> 2개의 부(chambers)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부(Civil Chamber), 형사부(Penal Chamber). 민사부(Civil Chamber)는 민사분쟁, 혼인, 가족, 행정사건, 노동, 상사분쟁을 다루고, 형사부(Penal Chamber)는 오직 형사사건만을 다룬다.<sup>48)</sup>

대법원은 입법행위(legislative acts), 행정규제(executive regulations)를 검토할 권한 또는 미국 법원과 같이 판례법(case law)을 제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캄보디아 대법원은 오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매 4분기마다 대법원판결집(Bulletin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s)을 발간하고, 이는 하급심법원이 참고할 모범판결(model judgments)로서 사용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원의 선례구속성의 유무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sup>49)</sup>

## 2) 대법원 소속 검찰청(General Prosecution attached to the SC)<sup>50)</sup>

### 가) 조사감독국(Office of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of Investigation)

이 사무국은 조사의 합법성 보장, 조사상황에 관한 문서검토, 조직의 범위반 외부에 관한 검토, 필요시 직접 조사 수행 또는 부가적인 조사의 수행한다.

### 나) 형사국(Criminal Office)

형사국은 형사절차상 검찰총장의 기소권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그 구체적인 업무의 예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읽고, 사건의 결론을 내며, 질문을 제기하고 소송의 주요당사자로서 행위하며, 기소를 철회하는 등을 들 수 있다.<sup>51)</sup>

46) 법원조직법 제16조.

47) 법원조직법 제21조.

48) The Khmer Institute of Democracy, *The Judicial System of Cambodia* 11 (<http://www.khmerrough.com/pdf/CriticalThinking-Eng/Part1-CriticalThinking.pdf>) (2011. 2. 18. 최종방문).

49) *Id.*

50) 캄보디아 검찰은 대법원 소속과 항소법원 소속으로 나누어진다.

51) The Khmer Institute of Democracy, *supra* note 48, at 11.



#### 다) 민사국(Civil Office)

민사국은 국익(State's interest), 소수자(minors), 무능력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사업무에서 검찰총장(Prosecutor-General)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부서는 검찰총장(Prosecutor-General)이 공판에서 결론을 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증거 수집을 담당한다.<sup>52)</sup>

### 4. 항소법원

항소법원(Appellate Court)은 1993년 UNTAC(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시절 설립되었으며,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다.<sup>53)</sup> 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항소법원장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항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검사장(general prosecutor), 부검사 또는 평검사(a prosecutor from General Prosecutors' office)가 있으며, 법원서기도 그 구성원이다.<sup>54)</sup>

항소법원의 관할권은 캄보디아 전역을 포함한다.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1심법원으로부터 항고한 모든 사건들을 포함한다.

항소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므로, 만약 소송당사자가 제1심에서 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서기국(Clerk's office)을 통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제1심법원의 판결을 인용, 수정, 파기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공판절차와 제1심법원의 그것과의 차이점은 공판위원회(Trial Council)라고 불리는 세 명의 판사가 심리한다는 것과 제1심에서 남겨 놓은 사실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55)</sup>

항소이유는 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고 부당한 항소에 대한 제재도 없다. 그러므로 항소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항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sup>56)</sup>

52) Id.

53) ADB, supra note 1, at 26.

54) 법원조직법 제11조.

55) The Khmer Institute of Democracy, supra note 48, at 10.

56) Id.

## 5. 제1심 법원(지방법원, 군사법원)

제1심 법원은 제일 낮은 법원인데, 이는 지방법원(Provincial and Municipal Courts), 군사법원(Military Court)으로 나누어진다.<sup>57)</sup> 각 지방법원은 법원이 위치하여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프놈펜에 위치한 군사법원은 캄보디아 전역을 그 관할권으로 한다.<sup>58)</sup>

### 1) 지방법원(Provincial and Municipal Court)

지방법원은 최하급심인 공판법원이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은 두 개의 부서(departments)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판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더라도 각 부서 간의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판사는 민사 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다룰 수도 있다.<sup>59)</sup>

### 2) 군사법원(Military Court)

군사법원은 프놈펜에 위치하여 있으며, 군사범죄<sup>60)</sup>와 군인이 저지른 군대재산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군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통상의 범죄는 지방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군사법원은 행정적·논리적·재정적으로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ce)에 있다.<sup>61)</sup>

## Ⅲ. 법조인

### 1. 판사와 검사

현행법상 캄보디아의 검사는 소추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판사(investigating judge) 때문에 종종 검사의 역할이 제한된다. 일단 기소가 되면 사건조사담당 판사가 해당 사건을 공판절차로 진행시킬 정도의 증거가 충분

57) 앞으로 행정법원, 가정법원, 노동법원, 상사법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Id.*, at 9-10.

58) 법원조직법 제2조.

59) The Khmer Institute of Democracy, *supra* note 48, at 9.

60) 이때 군사범죄(military offenses)란 군대구성원이 군대규율을 위반하거나 군사시설(military property)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의미한다. 법원조직법 제9조.

61) The Khmer Institute of Democracy, *supra* note 48, at 9.

한지에 관하여 결정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sup>62)</sup>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사건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 공판절차에서도 검사의 역할은 제한된다. 형사공판에서 검사는 사건파일에 근거하여 성명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sup>6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특히 사법적 판단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검사의 항소는 결과적으로 항소법원과 당에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4)</sup>

## 2. 변호사<sup>65)</sup>

변호사는 변호사법(Statute of the Cambodian Bar)과 변호사윤리규범(Code of Ethics for Lawyers)에 의하여 규율된다. 변호사 모임으로는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와 이를 규율하는 변호사위원회(Bar Council)가 있다.

변호사법은 1995년 6월 15일에 통과되었는데, 이 법률은 법조인(legal profession)의 역할을 정의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법조인은 정의를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직업이고, 이는 변호사협회 체계 내에서 추구될 수 있다. 모든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반드시 변호사협회에 정식회원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원칙적으로 14개월 동안 연수변호사에 대한 연수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연수를 받은 변호사들은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합격한 연수생은 반드시 1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과정(internship)을 거쳐야 한다. 수습과정이 끝났을 때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된다. 그때 이들은 변호사협회의 회원증명서를 받게 되고 실무를 할 수 있다.

법률실무를 위한 지원서 접수 시에 변호사위원회는 지원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지게 된다. 정족수는 다수결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위원회의 회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법원 소속 검사장(Prosecutor-General)에게 서류일체를 송부할 수 있다. 법률실무를 위한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검사장은 그 지원서에 동의할 것이다.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로 이루어

62) ADB, *supra* note 1, at 27.

63) *Id.*

64) 역사적인 유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1993년 이전엔 검사들이 판사들을 보조하였고, 법원에서 공산당을 대표하였기 때문이다. *Id.* at 28.

65) (<http://www.bigpond.com, kh/users/kid/pdf/The%20Cambodian%20Judicial%20Process.pdf>) (최종방문 2011. 2. 18.).

진 합의부는 변호사회장의 면전에서 선서일자를 결정한다. 만약 필수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서류일체는 재고를 위하여 변호사협회(BA)로 다시 반환된다. 만약 변호사위원회(Council)는 이러한 검찰총장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그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다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위원회의 의견이 검찰총장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위원회는 그 지원자를 불러서 그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 만약 그 지원자가 지원서 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항소법원에 그 합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항소할 수 있다.

#### IV. 법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sup>66)</sup>

##### 1. 비공식적 분쟁해결

위에서 언급한 법적 메커니즘 이외에 캄보디아인은 종종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에 의존한다. 화해(reconciliation)는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만약 분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면 사건 당사자는 그 마을에서 연장자 또는 존경받는 사람 또는 뛰어난 사람(prominent)에게 그 사건의 해결을 맡길 수도 있다.<sup>67)</sup>

##### 2. 국왕청문제도

국왕청문제도(Royal Hearing)는 재판절차를 밟지 않는 절차인데, 시민들은 민사분쟁의 경우 그 분쟁을 국왕에게 화해를 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절차는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가 1993년에 도입하였다.

##### 3. 중재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중재자에 의한 분쟁해결하는 것을 규정하는 중재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선임한다. 이러한 중재자의 중재(arbitration)는 법원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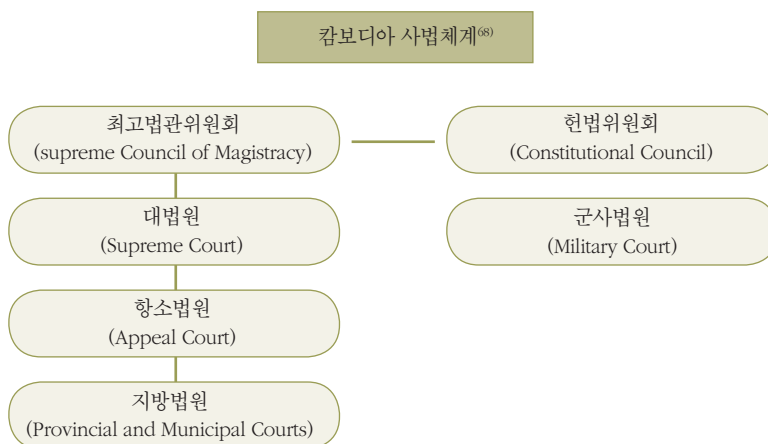
66) <<http://www.bigpond.com.kh/users/kid/pdf/The%20Cambodian%20Judicial%20Process.pdf>> (최종방문 2011. 2. 18.).

67) 이러한 분쟁해결은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V. 결 어

캄보디아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권을 구성하는 기관으로는 헌법위원회, 최고법관위원회, 법원이 있으나 법무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선거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고법관위원회는 법원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법관위원회는 법관을 추천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다. 또한 최고법관위원회는 캄보디아 국왕이 사법권 독립 보장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캄보디아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심법원으로는 지방법원 및 군사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은 위치한 지역을 관할권으로 하는 반면, 군사법원은 캄보디아 전역을 그 관할로 한다. 항소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를 관장하는데,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항소법원에는 또한 검사가 소속되어 있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법률심을 담당하는데, 통상 5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9명의 판사가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를 심리한다. 대법원에는 검찰청(General Prosecution Department)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는 조사감독국, 형사국, 민사국으로 구분된다. 검사가 법원에 소속되어 그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캄보디아의 소추권과 재판권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8) ADB, *supra* note 1, at 14 Figure 1.